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13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67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승급)제2항 중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을 ‘매월 1일’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회장 등 선거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2013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 제 68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회장 등 선거에 관한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를 ‘회장 등에 대한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으로 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의 조제목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 중 이 회의에 가입한 후 선거일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회원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4조(선거일) 중 ‘선거일 10일 이전에 공고’를 ‘이 회의 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0일전까지 선거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2항 중 ‘선거일 5일 전에’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7일전까지’로 하고, 제6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에 위원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2.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⑨ 위원회는 위원 또는 이 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권한과 임기)의 조제목 중 ‘권한’ 을 ‘직무’ 로 하고, 제2항 중 ‘투표와 개표 업무를’ 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와 개표업무, 당선인 결정을’ 로 하며, 제4항의 ‘선거 종료 후 2개월’ 을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선거인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을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선거인이 아닌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로부터 2일전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3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절차’ 를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으로 한다.

제7조(입후보자의 등록) 제2항 중 ‘제1호’ 를 ‘제5호’ 로 하고, 제3항 중 ‘제2호 서식’ 을 ‘제6호 서식’ 으로 ‘추천장을’ 을 ‘추천장과 제7호 서식의 후보자 각서를’ 로, 제4항 중 ‘선거일 3일전’ 을 ‘선거일부터 7일전 2일간’ 으로 한다.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 부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⑧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⑩ 후보자는 공약사항을 소개하는 공약자료(A4용지 규격 1매의 서면자료와 그 서면내용을 담은 한글워드파일, 작성형식자유)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약을 이 회 전체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배부하고, 이 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선거운동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후보자 추천인만 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①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 자정까지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선거운동방법)①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한하여 전화, 회원시설방문, 인터넷 전자우편, 후보자 명의 계정의 SNS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에사용하는 홍보 물은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선거공약자료에 한한다.

②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운동기간 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과 행사를 개최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후보자소견발표)①후보자는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투표개시전 후보자소견발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소견발표 일시·장소 및 형식 등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는 후보자소견발표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선거운동의 금지·제한)①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2항 중 ‘무기명 비밀투표’를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단체회원인 경우 소속 단체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9조(당선인 결정) 제1항 1호와 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시행하고 재투표결과 유효투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당선인과 이 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전원과 이 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하고, 제2호서식을 제6호서식으로 하며,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제7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